

##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甲회사(이하 “회사”)가 乙회사(이하 “문자재 판매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하고, “문자재 판매사업자”가 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문자메시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이라 함)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건전한 문자메시지 유통환경 조성)** “문자재 판매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하여 문자 메시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전송자격인증제)** ① “문자재 판매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회사”에서 전송자격인증 업무를 위탁한 운영 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전송자격인증 승인주체는 “회사”이며, “문자재 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서 등 전송자격인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운영 기관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해야 한다.

③ “문자재 판매사업자”는 본 협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스팸 전송방지를 위한 “회사”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회사”는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송자격 인증이 취소된 문자재 판매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재 조치 등)** ①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다음 각호를 비롯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식별코드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변작, 또는 유효하지 않은 식별코드를 삽입한 최초 발신 재판사
2.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조치의무 및 기술적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최초 발신 재판사
3.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은 최초발신 재판매사업자
4.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재판매사업자와 거래 행위
5.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재판매사업자와 거래 행위
6. 신규가입 중지 기간 중에 가입자 모집
7. 거짓이나 허위로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는 등 요건을 위반
8.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②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송차단,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협정서 해석 등)** ① 본 협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간의 별도의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할법원)** 본 협정서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기명날인(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회사”

상 호 :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인)

“문자재판매사업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